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인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833
----------	------

발의연월일 : 2017. 2. 28.

발의자 : 박인숙 · 이명수 · 김성원
김석기 · 이군현 · 김현아
여상규 · 장제원 · 김세연
이현재 의원(10인)

제안이유

풍납토성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초기 백제의 성으로, 적극적인 보존 및 지원을 통해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토성 내부 전체를 사적으로 확대하여 지정하는 것을 추진한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매입완료한 토지가 전체면적의 29% 수준에 불과하고 매입 토지 중 발굴지역은 30% 수준(2015년 기준)에 머무르는 등 정비사업이 초기 단계에 있어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음.

또한, 「문화재보호법」은 개별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어 풍납토성과 그 주변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을 동시에 보존·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풍납토성을 보존·지원함으로써 풍납토성의 역사정체성을 규명

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며 나아가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풍납토성의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승시키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문화재청장은 풍납토성 보존·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풍납토성 보존·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보존·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풍납토성 보존·지원 추진단을 둠(안 제6조).
- 라. 보존·지원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보존·지원지구 지정, 보존·지원지구의 보호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마. 서울특별시장은 보존·지원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지원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
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풍납토성의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승시키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납토성”이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호인 서울 풍납동 토성을 말한다.
2. “보존·지원지구”란 풍납토성의 보존·지원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3. “보존·지원사업”이란 제5조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풍납토성을 보존·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지원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지원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제5조(풍납토성 보존·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재청장은 풍납토성 보존·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풍납토성 보존·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풍납토성 보존·지원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보존·지원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토지와 건물 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보존·지원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풍납토성 보존·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송파구청장에게 종합계획 및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송파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서울특별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실시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풍납토성 보존·지원 추진단의 설치) ① 보존·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풍납토성 보존·지원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초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보존·지원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조사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존·지원지구의 지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존·지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지원지구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보존·지원지구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 보존·지원지구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문화재청장은 보존·지원지구를 지정·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존·지원지구를 지정·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은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존·지원지구의 보호) 문화재청장이 보존·지원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한 지역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으로 정해진 것으로 본다.

제10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지원지구에서 토지·건축물을 소유한 지역 주민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이주대책) ① 서울특별시장은 보존·지원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사람을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제12조(보상금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지원지구에서 토지·건축물을 소유한 지역 주민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자산가치의 하락 등을 감안하여 보상금 산정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을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의 대상·범위와 보상금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지원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지원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생활편의 시설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보존·지원지구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4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국회에 대한 제출) 문화재청장은 풍납토성 보존·지원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5 및 25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5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풍납토성 보존·지원지구
256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풍납토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